



제420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남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5233호)

2025. 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3
가. 개정안의 내용	3
나. 검토의견	3
다. 관계 기관 의견	6
2. 군복무·출산크레딧 확대	7
가. 개정안의 내용	7
나. 검토의견	10
(1) 군복무크레딧 보장 강화	10
(2) 출산크레딧 보장성 강화	13
(3) 출산크레딧 비용 전액 국가 부담	16
다. 관계 기관 의견	17
3. 보험료율 및 명목소득대체율 인상	18
가. 개정안의 내용	18
나. 검토의견	22
다. 관계 기관 의견	27

4.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28
가. 개정안의 내용	28
나. 검토의견	29
다. 관계 기관 의견	33
5. 생애최초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도입	34
가. 개정안의 내용	34
나. 검토의견	35
다. 관계 기관 의견	39
6. 육아휴직 기간 연금보험료 지원	40
가. 개정안의 내용	40
나. 육아휴직 기간의 연금보험료 납부	41
다. 검토의견	43
라. 관계 기관 의견	46

I. 개요

1. 김남희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5233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남희의원 등 14인
- (2) 제 안 일 : 2024. 11. 4.
- (3) 회 부 일 : 2024. 11. 5.

나. 제안이유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 의제로서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이를 위하여 현재 실시 중인 군복무 크레딧이나 출산 크레딧 제도를 강화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며, 청년 및 육아휴직자에 대하여도 연금보험료를 지원하여 국민연금 가입을 독려하고 가입 기간 중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상향하는 모수(母數)개혁도 추진되어야 할 것임.

이에 국민연금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1) 국가의 지급보장을 명문화함(안 제3조의2).

- 2) 군복무크레딧 발생 시점을 군 복무를 마친 날로 하고, 군복무크레딧에 따른 가입 인정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전체’로 확대함(안 제18조).
- 3) 출산크레딧의 발생 시점을 자녀를 얻은 때로 하고, 출산크레딧에 따른 가입 인정 기간을 1자녀당 24개월로 하며, 가입 인정 기간의 상한을 없앴(안 제19조).
- 4) 소득대체율을 2025년부터 50%로 상향함(안 제51조제1항).
- 5) 보험료율을 2037년에 13%가 되도록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함(안 제88조 및 부칙 제4조).
- 6)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하여도 국가가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며,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기간 상한을 현행 12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함(안 제100조의4).
- 7) 20세 또는 30세가 되는 날까지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연령이 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3개월간 지역가입자로 가입한 것으로 보게 하며, 해당 기간의 연금보험료는 국가가 전부 지원하도록 함(안 제100조의5 신설).
- 8) 가입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속하는 달에 대하여 국가가 연금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도록 함(안 제100조의6 신설).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국민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현행	개정안
제3조의2(국가의 책무)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u><신설></u>	제3조의2(국가의 책무) ① ----- ----- 지급되도록 보장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② 국가는 연금급여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연금 재정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부담한다.
※ 시행일: 2025년 1월 1일	

나. 검토의견

-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3개 직역연금에 대하여는 급여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부담금 또는 기금으로 충당할 수 없을 때 국가가 그 부족액을 부담하여야 한다거나(공무원·군인연금) 지원할 수 있도록(사립학교교직원연금) 하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¹⁾

1) 「공무원연금법」 제71조(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66조제1항에 따라 부담하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국가가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규정 외에 연금급여 지급액을 국민연금 재정으로 충당할 수 없을 때 그 부족액을 국가가 직접 부담하게 하는 등 국가가 국민연금급여의 지급을 명확하게 보장하는 형태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함.²⁾

□ 이에 개정안은 국가가 국민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법률에 국민연금급여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더라도 실제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려면 국가의 재정 여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으며,³⁾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에 따른 장기적인 재원 마련 방안 등 국가의 재정 부담 가능성에 대하여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2013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제3조의2(국가의 책무)가 신설될 당시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국가는 이 법에 따른 급여의

는 부담금(이하 “연금부담금”이라 한다)의 금액은 매 회계연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수예산의 9퍼센트로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8조에 따른 급여 중 퇴직급여 및 퇴직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 연금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이하 “보전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군인연금법」 제45조(보전금) 이 법에 따른 급여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 및 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국가에서 부담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3조의7(국가의 지원) 법률 또는 제도적인 사유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기금으로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가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2) 「국민연금법」 제3조의2(국가의 책무)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정부는 2024년 9월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서 청년세대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의 지급보장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연금개혁과 동시에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함.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한다”는 문구로 의결되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과정에서 ‘국가 지급보장 의무가 명문화될 경우 현재 국가 재무제표에 계상되고 있지 않은 국민연금 총당부채를 산정·계상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실제 국민연금이 고갈될 경우 바로 확정부채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향후 재정 운용이나 국가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기획재정부 의견이 제시되었고,⁴⁾

이에 따라 현행과 같이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문구로 수정의결되었는데,

국민연금 총당부채를 산정·계상하여 가시화하게 되면 국민연금 재정 상황에 대한 면밀한 이해와 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측면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 참고로 제21대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주관한 ‘연금개혁 공론화’에서 시민대표단(492명)의 92.1%는 학습과 숙의·토론을 모두 마친 후 진행된 최종(3차) 설문조사(2024년 4월 21일)에서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국민연금법」에 국가의 지급 의무를 규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동의하였음.

□ 아울러 남인순의원(의안번호 제176호), 김선민의원(의안번호 제334호), 소병훈의원(의안번호 제609호), 서영석의원(의안번호 제808호), 한정애의원(의안번호 제1056호), 이수진의원(의안번호 제1505호), 김미애의원(의안번호 제3723호), 주호영의원(의안번호 제4625호)

4)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제1908637호) 체계자구심사 검토보고서에 게재된 기획재정부 의견임.

및 전진숙의원(의안번호 제6006호)이 각각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에서 대표발의한 9건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이들 법률안과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 관계 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신중검토

-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국가의 지급보장 조항은 모수개혁을 포함한 연금개혁에 관한 국민적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기획재정부) 신중검토

- 국가의 지급보장 조항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은 연금개혁 과정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2. 군복무·출산크레딧 확대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현행법에 규정된 군복무·출산크레딧에 따른 가입 기간 추가 산입 범위를 확대하고, 가입 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앞당기면서, 출산크레딧에 따른 비용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게 하려는 것임.

- 군복무크레딧에 대해서는 인정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실제 군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되, 가입 기간 추가 산입을 위한 최소 복무기간(현행 6개월)을 삭제하고, 가입 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해당 병역의무 완료 시’로 앞당기려는 것임(안 제18조).

- 출산크레딧에 대해서는 첫째 자녀부터 상한 없이 가입 기간 추가 산입을 자녀당 24개월씩 인정하고, 가입 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출산 시로 앞당기며, 여기에 드는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현행	개정안
제18조(군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u>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u> 에는 6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후단 신설> 다만, 「병역법」	제18조(군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 ----- <u>해당 병역의무를 마친 날에 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u> ----- ----- ----- ----- <u>. 이 경우 추가로 산입하는</u>

현행	개정안
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 4. (생략) ②·③ (생략)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u>2 이상의 자녀가 있는</u>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u>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u>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후단 신설> 다만,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은 50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자녀 수의 인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u>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u> 2. <u>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둘째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12개월에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한 개월 수</u>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제51조(기본연금액) ①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1천분의 1천200을 곱한 금	기간이 1개월 미만인 때에는 1개월로 한다. <단서 삭제> 1. ~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u>자녀</u>-----<u>자녀를 얻은 때에는 그 자녀를 얻은 날에 1자녀 당 24개월을</u>----- -----<u>. 이 경우 자녀 수의 인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단서 삭제> <삭제> <삭제> ② (현행과 같음) ③ -----<u>전부</u>-----. 제51조(기본연금액) ① -----<u>1천500을</u>-----

현행	개정안
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더한다. 1. (생략) 2.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 수급 전년도에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총 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금액은 그 금액으로 한다. 가. (생략) 나. 제18조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u>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u> 다. (생략) ②·③ (생략)	-----. ----- ----- ----- -----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 ----- -----금액 다.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병역

현행	개정안
	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자녀를 얻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나. 검토의견

(1) 군복무크레딧 보장 강화

□ 개정안과 같이 군복무크레딧으로 추가 산입되는 가입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군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면서 최소 복무기간을 삭제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이행한 가입자의 노령연금액이 인상되면,

군복무에 따른 보상이 강화되고, 군복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는 등의 부수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는 측면이 있음.

□ 그러나, 공무원연금 등 타 직역연금제도에는 군복무크레딧이 없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군복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게 되면 제도간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타 직역연금에서의 군복무 가입 기간 산입제도를 함께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의 경우 군복무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산입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기여금을 개인 부담으로 소급하여 납부하여야 하는바,

- 개정안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하여서만 개인의 보험료 부담 없이 복무기간 전체에 대하여 A값(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50%에 상당하는 소득(2024년 기준 약 150만원)을 산입하여주는 등 보상을 강화하게 되면 타 직역연금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한편 군복무크레딧 적용 시점을 현행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 시’에서 ‘해당 병역의무 완료 시’로 앞당기게 되면, 그 병역의무를 마친 때에 곧바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체감할 수 있어 병역의무 이행자의 보상 체감도를 높이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병역의무 종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병역법」 제72조제1항5)에서는 국민연금 군복무크레딧의 대상인 현역·예비역·보충역의 병(兵)의 병역의무가 40세에 종료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현역병·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복무나 전환복무를 마친 후 ‘전역’ 또는 전환복무·소집이 ‘해제’되는 날에 그 복무기간을 가입 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려는 취지라면,

‘해당 병역의무 완료 시’ 대신 ‘그 복무를 마친 날(관련 입법례: 「국적법」 제12조제3항제1호6))’이나 ‘전역한 날 또는 전환복무·소집이 해제된 날(「병역법」 상 용어)’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

5) 「병역법」 제72조(병역의무의 종료) ① 현역·예비역·보충역의 병, 전시근로역 및 대체역의 병역의무는 40세까지로 하고, 예비역·보충역의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의 병역의무는 「군인사법」에 따른 그 계급의 연령정년이 되는 해까지로 한다.

6) 「국적법」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③ 직계존속(直系尊屬)이 외국에서 영주(永住)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

1.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것으로 보임.

□ 아울러, 현행법에 따른 군복무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병역의무를 수행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는 때에 가입 기간 추가 산입을 인정받도록 설계되어 아직 군복무크레딧을 적용받는 수급권자는 많지 않은 상황이지만,

개정안과 같이 군복무크레딧 적용 시점을 앞당기게 되면 이에 따른 재정소요 발생 시점도 함께 앞당겨지게 되어 단기간 내 증대되는 재정부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국회예산정책처는 군복무기간 전체를 가입 기간에 추가 산입하면서 군복무크레딧 적용 시점을 ‘군복무 완료 시’로 앞당기게 되면 2025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연평균 3,493억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하였음.

< 개정안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 추계 결과 >

(단위: 억원)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계	연평균
군복무크레딧	-7)		2,548	7,353	7,565	17,466	3,493

주: 현역병·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복무나 전환복무를 마친 후 ‘전역’ 또는 전환복무·소집이 ‘해제’되는 날에 그 복무기간이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추계치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참고로 2023년 10월 정부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개정안과 같이 군복무크레딧 적용 시점을 ‘군복무 완료 시’로 앞당기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7)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입대하여 2027년에 병역의무를 완료하는 사람부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제하여 추계하였음.

제21대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주관한 ‘연금개혁 공론화’에서 학습과 숙의·토론을 모두 마친 시민대표단(49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최종(3차) 설문조사(2024년 4월 21일)에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논의되고 있는 군복무크레딧 부여 기간을 6개월에서 전체 복무기간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크레딧 발생 시점에 크레딧을 부여하고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에 대하여 각각 57.8%와 88.0%가 동의하였음.

- 아울러 서영석의원(의안번호 제808호), 김선민의원(의안번호 제952호), 김예지의원(의안번호 제1093호), 이수진의원(의안번호 제1505호), 김미애의원(의안번호 제3723호) 및 주호영의원(의안번호 제4625호)이 각각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에서 대표발의한 6건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이들 법률안과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출산크레딧 보장성 강화

-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2015년(1.24명) 이후로 매년 계속 감소하여 2023년에는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임에도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출산을 장려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출산크레딧은 현행법상 둘째 자녀부터 적용되어 그 도입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기 어려운 상황인바,

첫째 자녀부터 상한 없이 자녀당 24개월씩의 가입 기간 추가 산입을 인정하는 등 출산크레딧의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은 실질

적인 자녀 양육 기간에 대한 보상과 함께 출산·양육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려는 것으로서 그 입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또한 출산크레딧 적용 시점을 현행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 시’에서 ‘출산(인지 및 입양 포함. 이하 같다) 시’로 앞당기게 되면, 출산 시에 바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체감할 수 있게 되어 그 혜택을 가시화하고 효능감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출산크레딧 적용 시점을 현행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 시’에서 ‘출산 시’로 앞당기게 되면 군복무크레딧 적용 시점을 앞당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단기간 내 증대될 수 있는 재정부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국회예산정책처는 출산크레딧에 따라 추가 산입되는 가입 기간의 상한을 폐지하고 첫째 자녀부터 24개월씩의 가입 기간 추가 산입을 인정하면서 그 적용 시점을 ‘출산 시’로 앞당기려는 개정안의 경우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연평균 1조 5,916억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하였음.

< 개정안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 추계 결과 >

(단위: 억원)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계	연평균
출산크레딧	7,099	15,391	16,897	18,977	21,215	79,579	15,91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참고로 2023년 10월 정부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씩 가입 기간을 추가 산입하되 현행법에 따른 상한(50개월)을 폐지하고, 출산크레딧 적용 시점을 ‘출산 시’로 앞당기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제21대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주관한 ‘연금개혁 공론화’에서 시민대표단(492명)의 82.6%는 학습과 숙의·토론을 모두 마친 후 진행된 최종(3차) 설문조사(2024년 4월 21일)에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출산크레딧을 첫째 자녀까지 확대하고, 자녀당 추가 산입되는 가입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에 동의하였음.

□ 아울러 남인순의원(의안번호 제189호), 성일종의원(의안번호 제380호), 서영석의원(의안번호 제808호), 김선민의원(의안번호 제952호), 이수진의원(의안번호 제1505호), 김태년의원(의안번호 제4609호), 김미애의원(의안번호 제3723호), 주호영의원(의안번호 제4625호) 및 전진숙의원(의안번호 제7030호)이 각각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에서 대표발의한 9건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이들 법률안과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 출산크레딧 비용 전액 국가 부담

□ 출산크레딧에 의한 가입 기간 추가 산입에 따른 비용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규정한 「국민연금법」 제19조제3항⁸⁾에 따라 일반회계와 국민연금기금이 분담하고 있으나,

그 분담 비율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출산크레딧에 따른 비용의 30%를 일반회계가 분담한다는 정부 내부 방침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고 있음.

- 출산크레딧이 시행된 2008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총 88억 7,7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29억 1,900만원)가 32.9%를 부담하였음.

□ 출산크레딧을 도입할 당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출산 장려’라는 국가정책적 차원이 고려된 점⁹⁾, 저출생 문제 해결은 국가적 과제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출산크레딧 비용을 전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생각됨.

□ 다만, 출산을 장려하려는 출산크레딧의 정책목적이 달성되면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증가하게 되어 국민연금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도 있으므로, 국가의 비용 부담을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8) 「국민연금법」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③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9)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개정이유 일부.

다. 관계 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신중검토

- 출산이나 군 복무 등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과 실질 가입 기간 확대를 위하여 크레딧 혜택을 강화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국고 지원이 증가하는 만큼 재정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하고, 연금개혁안과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논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 (기획재정부) 신중검토

- 군복무크레딧·출산크레딧의 지원기간 및 방식, 재원분담비율 등 구체적 방안은 제도의 효과성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3. 보험료율 및 명목소득대체율 인상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2024년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2036년까지 매년 0.3%p씩 인상한 후 2037년에 전년 대비 0.4%p 인상하여 그때부터 13%가 되도록 상향 조정하고,

2028년까지 매년 0.5%p씩 인하될 예정인 명목소득대체율(2024년 현재 42%)은 2025년부터 50%가 되도록 인상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1조(기본연금액) ①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1천분의 1천20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더한다.	제51조(기본연금액) ① ----- ----- -----1천500을----- -----.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 수급 전년도에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총 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 다만, 다음	2. (현행과 같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금액은 그 금액으로 한다. 가. (생략) 나. 제18조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u>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u> 다. (생략) ②·③ (생략)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등) ①·② (생략) ③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u>1천분의 45</u>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되, 그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의 <u>1천분의 90</u>으로 한다. ⑤ (생략)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0조(기본연금액 산정에 대한 적용례) 2008년부터 <u>2027년까지</u> 각 연도별 제5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본연금액은 제5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1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가. (현행과 같음) 나. ----- ----- -----<u>금액</u> 다.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u>1천분의 65</u> -----. ④ ----- ----- ----- ----- -----<u>1천분의 130</u>-----. ⑤ (현행과 같음)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0조(기본연금액 산정에 대한 적용례) ----- ----- ----- ----- -----
--	---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 17. (생략)

18. 2025년은 1천분의 1천245

19. 2026년은 1천분의 1천230

20. 2027년은 1천분의 1천215

-----.

1. ~ 17.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연금보험료에 관한 적용례) ① 2025년부터 2036년까지 각 연도별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사업장가입자의 기여금과 사용자의 부담금은 각각 제8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25년은 1만분의 465

2. 2026년은 1만분의 480

3. 2027년은 1만분의 495

4. 2028년은 1만분의 510

5. 2029년은 1만분의 525

6. 2030년은 1만분의 540

7. 2031년은 1만분의 555

8. 2032년은 1만분의 570

9. 2033년은 1만분의 585

10. 2034년은 1만분의 600

11. 2035년은 1만분의 615

12. 2036년은 1만분의 630

	② 2025년부터 2036년까지 각 연도별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제8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25년은 1천분의 93 2. 2026년은 1천분의 96 3. 2027년은 1천분의 99 4. 2028년은 1천분의 102 5. 2029년은 1천분의 105 6. 2030년은 1천분의 108 7. 2031년은 1천분의 111 8. 2032년은 1천분의 114 9. 2033년은 1천분의 117 10. 2034년은 1천분의 120 11. 2035년은 1천분의 123 12. 2036년은 1천분의 126
--	--

나. 검토의견

- **보험료율**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자신의 기준소득월액¹⁰⁾ 대비 연금 보험료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의 비율로, 현행 「국민연금법」에 따른 보험료율은 9%(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4.5%씩 부담)임.
- **명목소득대체율**은 가입 기간 동안의 평균소득(생애평균소득)이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과 같은 가입자(평균소득가입자)가 4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하였을 때 수급하게 되는 기본연금액이 그 가입자의 생애평균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2024년 현재 42%이나, 향후 4년간 매년 0.5%p씩 하향 조정되어 2028년부터 40%로 적용될 예정임.¹¹⁾

< 명목소득대체율 산식 >

[용어 정의¹²⁾]

- **A값**: 연금 수급 직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
- **B값**: 가입자 개인의 가입 기간 동안의 평균소득(「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2호)
- **법정계수**: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곱하도록 본문에 규정된 계수(현행법: 1천분의 1천200) ⇒ 개정 대상
- **n값**: 가입 기간 중 20년을 초과한 부분(年 단위)

10) 「국민연금법」 제3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기준소득월액”이란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11) 「국민연금법」 제51조(기본연금액) ①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1천분의 1천20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후략)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0조(기본연금액 산정에 대한 적용례) 2008년부터 2027년까지 각 연도별 제5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본연금액은 제5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1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 16. (생략)
17. 2024년 1천분의 1천260
18. 2025년은 1천분의 1천245
19. 2026년은 1천분의 1천230
20. 2027년은 1천분의 1천215

[명목소득대체율의 계산] ※ 가정: ① A=B ② 40년간 가입(n=20)

$$\circ \text{명목소득대체율}(\%) = \frac{(A+B) \times \text{법정계수}}{12B} \times \left(1 + \frac{50}{1,000} \times n\right) \times 100(\%)$$

○ $A = B$, $n = 20$ (40년간 가입), 법정계수에 '1천분의 1천200'을 각각 산식에 대입하면,

$$\text{명목소득대체율}(\%) = \frac{2B \times 1.2}{12B} \times \left(1 + \frac{50}{1,000} \times 20\right) \times 100(\%) = 40 \text{이 도출됨.}$$

□ 그런데 정부가 2023년 3월 발표한 '제5차 재정계산'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은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2041년에 적자 전환 후 2055년에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어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심화된 측면이 있음.

< 제5차 재정계산(2023) 주요 결과 >

구분	추계기간	최대기금	수지적자	기금소진 (적립기금 규모)
제5차 재정계산 (2023년)	2023년 ~ 2093년	1,755조원 (2040년)	2041년	2055년 (△47조원)
제4차 재정계산 (2018년)	2018년 ~ 2088년	1,778조원 (2041년)	2042년	2057년 (△124조원)
제3차 재정계산 (2013년)	2013년 ~ 2083년	2,561조원 (2043년)	2044년	2060년 (△281조원)

자료: 보건복지부

- 12) 「국민연금법」 제51조(기본연금액) ①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1천분의 1천20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더한다.
-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
 -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연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환산한 금액
 -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연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
 - 연금 수급 전연도의 평균소득월액
 -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 수급 전연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총 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금액은 그 금액으로 한다.
 - 제17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제18조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제19조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 또한 국민연금공단이 공표한 2024년 7월 기준 통계자료에 따르면, 노령연금 월평균 수급액은 약 65만 2천원이고, 노령연금 월평균 수급액이 60만원 미만인 수급권자의 비율은 약 67.4%로 나타나, 국민연금이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노령연금 수급액별 수급권자 현황 >

(단위: 명, %)

계	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	40만원 ^{이상} 60만원 ^{미만}	6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8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130만원 ^{미만}	130만원 ^{이상} 160만원 ^{미만}	16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5,742,708	584,564	2,095,585	1,191,117	668,799	389,632	368,239	223,174	178,533	43,065
(100)	(10.2)	(36.5)	(20.7)	(11.6)	(6.8)	(6.4)	(4.0)	(3.1)	(0.7)

주: 2024년 7월 기준

자료: 국민연금공단

□ 이에 개정안은 2024년 현재 9%인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매년 0.3%p씩 12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한 다음 2037년에 전년 대비 0.4%p를 인상하여 그때부터 13%가 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면서,

2024년 현재 42%인 명목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낮추려는 현행 「국민연금법」에 따른 점진적 인하 계획을 중단하고, 이를 일시에 인상하여 2025년부터 50%가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개정안에 대하여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기금 적자 전환 시점과 소진 시점을 각각 2046년과 2062년으로 전망하였고,

보건복지부는 2024년 9월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 포함된 기금투자수익률 연평균 5.5% 달성 방안을 전제로 개정안에 따른 국민연금기금 적자 전환 시점과 소진 시점을 각각 2051년과 2066년으로 추계하였음.

□ 한편, 개정안은 “급여의 지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지 아니한데, 이 법 시행 전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대한 급여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1998년) 명목소득대체율을 종전의 70%에서 60%로 하향한 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이 법 시행 전 지급 사유가 발생한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면서(제1항), 이 법 시행 전의 가입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의 기본연금액 계산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제2항) 경과조치를 두고 있음.¹³⁾

- (2007년) 명목소득대체율을 종전의 60%에서 50%로 일시 하향한 후 20년간 매년 0.5%p씩 인하하여 40%가 되도록 조정한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4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면서(제1항), 이 법 시행 전의 가입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의 기본연금액의 계산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제2항) 경과조치를 두고 있음.¹⁴⁾

13) 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급여의 지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전의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분의 기본연금액의 계산은 제4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4)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4조(급여의 지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 참고로, 정부는 2024년 9월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보험료율을 13%까지 인상하되 연령대별로 인상속도를 차등화하고,¹⁵⁾ 명목소득대체율을 2024년 수준(42%)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아울러 한정애의원(의안번호 제1250호), 주호영의원(의안번호 제4625호), 김선민의원(의안번호 제4830호), 박수영의원(의안번호 제5437호), 이수진의원(의안번호 제5785호) 및 전진숙의원(의안번호 제6006호)이 각각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또는 명목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대표발의한 6건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이들 법률안과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제22대 국회 국민연금 모수개혁안 발의 현황 >

구분	보험료율	명목소득대체율
한정애의원안 (제1250호)	13% (매년 0.5%p씩 8년간 인상)	45% (일시 인상)
주호영의원안 (제4625호)	13% (매년 0.5%p씩 8년간 인상)	현행 유지
김선민의원안 (제4830호)	13% (매년 0.5%p씩 8년간 인상)	50% (매년 0.5%p씩 16년간 인상)
김남희의원안 (제5233호)	13% (매년 0.3%p씩 13년간 인상)	50% (일시 인상)
박수영의원안 (제5437호)	13% (출생연도별 인상속도 차등화)	현행 유지
이수진의원안 (제5785호)	13% (매년 0.5%p씩 8년간 인상)	45% (일시 인상)
전진숙의원안 (제6006호)	13% (매년 0.3%p씩 13년간 인상)	50% (매년 0.5%p씩 16년간 인상)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이 법 시행 전의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의 기본연금액의 계산은 제5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5) 정부는 20대는 16년간, 30대는 12년간, 40대는 8년간, 50대는 4년간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다. 관계 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신중검토

-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준은 기초연금·퇴직연금 등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개편 논의와 연계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기획재정부) 신중검토

- 명목소득대체율을 50%까지 인상하는 것은 국민연금재정의 안정성을 저해하므로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임.

4.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가. 개정안의 내용

□ 현행은 연금보험료 납부를 중지하였다가 재개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만 연금보험료를 12개월간 지원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납부재개 요건을 삭제하고 그 지원기간을 최대 36개월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00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국민인 <u>지역가입자</u> 로서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고 있는 자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기간은 <u>12개월</u> 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0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① ----- <u>지역가입자</u> ----- ----- ----- ----- ----- <u>36개월</u> -----.
1.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할 것. 다만,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아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삭 제>
2. (생략)	2. (현행과 같음)
<신설>	3. 이 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 시행일: 2025년 1월 1일	

나. 검토의견

□ 2020년 1월 「국민연금법」의 개정으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2022년 7월부터 동 사업을 시행하였음.

- (지원대상) 연금보험료 납부를 중지하였다가 재개(단, 실업크레딧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아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한 지역가입자 중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미만이고, 사업·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1,680만원 미만인 자
- (지원수준) 기준소득월액이 103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기준소득월액이 103만원을 초과하면 매월 46,350원을 정액으로 지원
- (지원기간) 최대 12개월까지 연금보험료 지원

□ 한편 정부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외에도 저소득 사업장가입자나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사업장가입자나 농어업인의 경우에는 소득·재산 및 영세사업장(사업장가입자)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이 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되려면 ‘납부재개’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하고,

지원기간도 사업장가입자는 최대 36개월까지인 반면, 지역가입자는 최대 12개월까지만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바,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이 저소득 사업장가입

자에 대한 지원보다 요건·기간 등에 있어 불리하여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 국민연금 가입자 대상별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비교 >

구분	두루누리 지원 (사업장가입자 지원)	실업크레딧 지원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시행	'12. 7월	'16. 8월	'95. 7월	'22. 7월
근거	법 제100조의3	법 제19조의2	법 부칙 제8541호 제7조	법 제100조의4
도입 목적	저임금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	구직급여수급자의 노후소득보장	농어업인의 노후소득보장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노후소득보장
지원 대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270만 원 미만 근로자 (사업장가입자)	구직급여 수급자 (지역가입자)	농어업인 (지역가입자 및 지역임의계속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납부재개자 (지역가입자)
지원 수준	보험료의 80% (최대 약 16.5만 원/월)	보험료의 75% (최대 47,250원/월)	보험료의 50% (최대 46,350원/월)	보험료의 50% (최대 46,350원/월)
재산· 소득 요건	(재산) 6억 원 미만 (종합소득) 4,300만 원 미만	(재산) 6억 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 원 이하 * 사업·근로소득 제외	(재산) 12억 원 미만 (종합소득) 6,000만 원 미만	(재산) 6억 원 미만 (종합소득) 1,600만 원 미만 * 사업·근로소득 제외
지원 기간	최대 36개월	최대 12개월	제한 없음 (다만, '31.12.31까지 지원, 일몰제)	최대 12개월

자료: 보건복지부

□ 이에 개정안은 재산 및 소득이 일정 금액 미만인 지역가입자 전반으로 연금보험료 지원 혜택을 확대하고, 현행 12개월의 지원기간을 36개월까지로 연장함으로써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에 도움을 주려는 입법 취지인 것으로 이해됨.

□ 다만, 개정안에 따라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기간의 상한을 현행 12개월에서 36개월까지로 연장하여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지원제도와와의 형평을 맞추는 과정에서 소득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함께 일치시키는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사업장가입자)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삼아 사업장가입자의 종합소득이 4,300만원을 초과하면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더라도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없음.¹⁶⁾
- (지역가입자)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제외하여 산정하므로 지역가입자의 사업·근로소득이 4,3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 종합소득이 1,680만원 미만이기만 하면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음.¹⁷⁾

16)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제8조에 따른 사업장 가입자로서 국민인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 및 부담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근로자의 재산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2(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대상) ⑥ 법 제10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등 국내외 경제상황, 국민의 재산·소득 분포 현황, 가입자의 종합소득 분포 현황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말한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96호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지원대상 종합소득기준) 영 제73조의2제6항의 종합소득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연 4,300만원 미만임을 말한다.

17)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국민인 지역가입자로서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고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재산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위한 재산 및 소득 기준) ② 법 제100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등 국내외 경제상황, 국민의 재산·소득 분포 현황, 가입자의 종합소득 분포 현황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말한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62호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지원대상 재산·소득기준) 영 제73조의4 제2항의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2.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종합소득 중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을 제외한 소득금액이 1,680만원 미만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 가. 이자소득
- 나. 배당소득
- 다. 사업소득
- 라. 근로소득
- 마. 연금소득
- 바. 기타소득

□ 아울러,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사업의 예산이 처음 편성된 2022년(265억 2,500만원) 이후 꾸준히 증가¹⁸⁾하여 2025년도 예산안에는 총 519억 1,200만원이 반영되었는데, 납부재개 요건이 삭제되고 지원기간이 연장되면 추가재정소요가 늘어나게 되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참고로, 2024년 9월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서도 ‘납부재개’ 요건을 삭제하여 저소득 지역가입자 전반을 대상으로 최대 36개월까지 연금보험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개편안이 제시된 바 있으며,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김선민 의원(의안번호 제379호), 주호영의원(의안번호 제4625호) 및 이수진의원(의안번호 제5785호)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이들 법률안과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8) 265억 2,500만원('22) → 382억 1,400만원('23) → 399억 4,700만원('24) → 519억 1,200만원('25안)

다. 관계 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신중검토

-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부담 경감을 통하여 국민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구체적인 지원 방안·시기 등에 대하여 연금개혁 논의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기획재정부) 신중검토

- 현행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가 2022년 7월 도입되어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할 때,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은 시기상조인 측면이 있으며,

최초 시행일로부터 3년 경과 후 현행 지원제도를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¹⁹⁾ 이를 통하여 제도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19) 법률 제16867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연금보험료 지원사업 평가 보고에 관한 특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0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지원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지체 없이 해당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생애최초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도입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공적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사람이 20세 또는 30세가 된 경우 국가가 3개월간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 100조의5 신설).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00조의5(청년에 대한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 ① 제6조에 따른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20세 또는 30세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20세 또는 30세가 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3개월간 지역가입자로 가입된 것으로 본다. 다만, 본문에 따른 가입자가 소득이 있게 된 때는 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그러하지 아니하다.</u> <u>1. 20세 또는 30세가 되는 날까지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u> <u>2.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제91조에 따른 납부 예외에 해당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적이 없는 경우</u> <u>② 제1항에 따른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으로 한다.</u> <u>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국가가 해당하는 기간에 대하여 전액을 부담한다.</u> <u>④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가입자를 대상으로 국민</u>

	<u>연금제도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u> <u>⑤ 그 밖에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100조의5(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생략)	제100조의7(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현행 제100조의5와 같음)
※ 시행일: 2025년 1월 1일	

나. 검토의견

- 2024년 현재 42%(매년 0.5%p씩 인하하여 2028년부터 40% 적용 예정)인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은 가입 기간이 ‘40년’인 평균 소득 가입자에 적용되는 수치인데,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고²⁰⁾ 비임금 근로자가 증가함에 따라, 2070년에 이르러 국민연금제도가 현재보다 더 성숙하더라도 신규 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은 27.6년²¹⁾으로 전망되어 실질소득 대체율은 명목소득대체율의 70%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됨.²²⁾

- 이에 개정안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이력이 없는 사람 중 20세 또는 30세에 도달한 청년에 대하여 지역가입자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2024년 9월 기준 390,000원²³⁾)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를 3개

20) 한국고용정보원(2021)에 따르면, 청년 취업자가 학업을 모두 마친 후 첫 일자리에 입직하기까지 대졸 이상의 경우 평균 11개월, 전문대졸의 경우 평균 13개월, 고졸 이하의 경우 평균 35개월이 각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21) 보건복지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2023. 10.

22) 가입자별 소득대체율은 그의 가입 기간에 비례하여 연동되도록 설계되어 있음.

23)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기준소득월액 및 적용기간)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하한액과 상한액을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3월 31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6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가. 하한액: 390천원

월간 지원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 이력을 우선 생성하여주고,

실직·휴직·병역·학업 등의 이유로 연금보험료를 미납한 기간에 대하여는 추후 납부제도²⁴⁾를 활용하여 가입 기간을 보충할 여지를 마련하여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이들의 가입 기간을 늘려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인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국민연금법」 제9조제3호²⁵⁾에 따라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더라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는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한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되는데,

개정안에 따라 20세가 되는 때에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생성된 자가 같은 법 제91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²⁶⁾에서 정하는 연금보

나. 상한액: 6,170천원

2. 적용기간: 2024년도 7월분부터 2025년도 6월분까지

24) 「국민연금법」 제91조(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① 납부 의무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중인 경우

2. 「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3. 「초·중등교육법」 제2조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이하 생략)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① 가입자는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이하 “추납보험료”라 한다)의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2. 제91조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

25) 「국민연금법」 제9조(지역가입자) 제8조에 따른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3.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자(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

26) 「국민연금법」 제91조(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① 납부 의무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중인 경우

2. 「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3. 「초·중등교육법」 제2조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5. 종전의 「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시설이나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6. 1년 미만 행방불명된 경우. 이 경우 행방불명의 인정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그 밖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

혐료 납부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서 연금보험료 납부 의무를 지게 되므로 이를 미납하였을 때 독촉 및 체납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고,²⁷⁾

같은 법 제91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납부 예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²⁸⁾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 예외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는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자동 생성됨으로써 불이익 처분의 대상이 되거나 부가적인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불편이 야기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방안을 함께 강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의 연금보험료 지원액 산정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이 적용되어 연금급여액이 줄어드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는 점에 대하여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 예를 들어, 27세에 처음 취업한 사업장가입자 甲(보수월액 300만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7) 「국민연금법」 제95조(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①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기한(제89조제5항에 따라 납부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말한다)까지 내지 아니하거나 제90조의2에 따른 제2차 납부의무자가 연금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를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28)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1조(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 신청 등) ① 사용자나 지역가입자는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 신청을 하여야 한다.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1조(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 등) ① 법 제91조제1항 및 영 제61조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 신청을 하려는 사용자나 지역가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28호서식의 신청서에 진단서나 휴직 발령서 사본 등 납부 예외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병역의무의 수행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원)이 12개월간 근무한 후 불의의 사고로 장애2급이 발생한 경우, 현행법에 따른 甲의 ‘가입 기간 중 평균소득’은 300만원이지만, 甲이 개정안에 따라 20세 때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았다면 ‘가입 기간 중 평균소득’은 247만 8천원²⁹⁾으로 낮아져 장애연금 수급액이 감소하게 됨.

- 아울러,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이력이 없는 사람 중 20세 또는 30세에 도달한 청년에 대하여 지역가입자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를 3개월간 지원하려는 개정안에 대하여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연평균 약 472억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하였음.

< 개정안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 추계 결과 >

(단위: 억원)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계	연평균
출산크레딧	390	414	469	539	548	2,360	47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참고로, 남인순의원이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에서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554호)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개정안과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9) 계산식: $[300\text{만원} \times 12\text{개월} + 39\text{만원(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 \times 3\text{개월(지원 기간)}] \div 15\text{개월} = 247\text{만 } 8\text{천원}$.

다. 관계 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신중검토

- 국민연금 조기가입 유도 및 청년층 인식 개선에 대한 일부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하나, 가입 이력이 있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청년과의 형평성이나 국가의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기획재정부) 신중검토

- 일정 연령의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보험료 지원은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사각지대를 축소하려는 재정지원의 정책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입장임.

6. 육아휴직 기간 연금보험료 지원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사업장가입자가 육아휴직을 한 경우, 그 기간의 연금보험료 전액(사용자 부담금 제외)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0조의6(육아휴직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① 국가는 국민인 국민연금 가입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속하는 달에 대하여 연금보험료 전액(사용자의 부담금은 제외한다)을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육아휴직자 연금보험료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나. 육아휴직 기간의 연금보험료 납부

□ (육아휴직 시 연금보험료 납부 의무) 납부 의무자는 「국민연금법」 제91조제1항제1호³⁰⁾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³¹⁾에 따른 육아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 중이면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연금보험료³²⁾를 내지 아니할 수 있음.

-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연금보험료 납부 의무자는 「국민연금법」 제90조제1항³³⁾에 따라 매달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원천공제 후 납부하여야 하는 ‘사용자’로서,
-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납부 의무자인 ‘사용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³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를 신청함으로써 육아휴직 기간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 전액을 내지 아니할 수 있는데,

30) 「국민연금법」 제91조(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① 납부 의무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중인 경우

3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2) 「국민연금법」 제3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연금보험료”란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부담금 및 기여금의 합계액을,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내는 금액을 말한다.

11. “부담금”이란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12. “기여금”이란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33) 「국민연금법」 제90조(연금보험료의 원천공제 납부 등) ①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그에게 지급할 매달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내야 한다. 이 경우 제100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받는 때에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에서 지원받는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에 지원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34)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1조(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 신청 등) ① 사용자나 지역가입자는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 신청을 하여야 한다.

-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에도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이 육아휴직 직전에 적용되던 기준소득월액의 50% 미만인 경우에 연금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게 되고, 50% 이상인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 (복직 후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 육아휴직을 마친 사업자가입자는 「국민연금법」 제9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1항³⁵⁾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이하 “추납보험료”라 한다)의 추후 납부를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할 수 있는데,

육아휴직 기간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91조제1항제1호³⁶⁾에 따라 사용자의 납부 의무가 없게 되므로 사업자가입자 본인이 추납보험료 전액을 직접 부담하여야 함.

-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전체 육아휴직자(934,646명) 가운데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인원은 약 0.69%(6,443명)에 불과한바,
- 추납보험료 납부으로써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는 등 장기적 관점의 혜택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 발생하는

35) 「국민연금법」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① 가입자는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이하 “추납보험료”라 한다)의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2. 제91조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2조(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 등) ① 가입자는 법 제9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이하 “추납보험료”라 한다)를 공단에 내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36) 「국민연금법」 제91조(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① 납부 의무자는 사업자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중인 경우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이 반영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육아휴직자 추후 납부 신청 인원 >

(단위: 명, %)

구분	육아휴직으로 인한 납부예외자(A)	추후 납부 신청 인원(B)	비율 (B/A)
2019년	164,472	678	0.41
2020년	175,852	2,257	1.28
2021년	181,388	1,866	1.03
2022년	202,257	1,040	0.51
2023년	210,677	602	0.29
계	934,646	6,443	0.69

자료: 국민연금공단

다. 검토의견

□ 개정안은 사업장가입자가 육아휴직을 한 경우 그 기간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의 반액을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단축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입법 취지인 것으로 생각됨.

□ 참고로, 공무원연금·군인연금의 급여에 드는 비용은 공무원·군인이 부담하는 ‘기여금’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부담금’으로 구성되는데,³⁷⁾

37) 「공무원연금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기여금”이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공무원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9. “부담금”이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군인연금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기여금”이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제42조에 따라 군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6. “부담금”이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공무원³⁸⁾·군인³⁹⁾은 육아휴직 기간에 상응하는 기여금만을 복직 후에 소급하여 납부함으로써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반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는 추납보험료 전액을 모두 부담하여야 하는바, 개정안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형평을 제고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생각됨.

□ 다만, 지역가입자와 같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국민연금 가입자와의 형평이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법제적 측면에서는,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각각 연금보험료의 반액에 해당하는 ‘사용자의 부담금’과 ‘사업장가입자 본인의 기여금’의 합계액으로 구성되는 것임을 고려할 때,

국가가 지원하는 금액을 ‘연금보험료 전액(사용자의 부담금은 제외한다)’으로 규정한 안 제100조의6제1항은 육아휴직 기간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를 (i) 국가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반액씩 분담하게 하려는 것인지 또는 (ii) 국가와 사용자가 반액씩 분담하게 하여 사업장가입자 본인의 자부담분을 폐지하려는 것인지에 따라 그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명확히 수정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i) 개정안이 사업장가입자 본인의 자부담분(100%) 중 절반을 국가의 지원분으로 전환하려는 것인 경우: 국가가 ‘연금보험료의

38)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5조(병역복무 휴직자 등의 기여금 납부) ① 공무원이 병역복무나 그 밖의 사유로 휴직하여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휴직기간 동안 기여금을 내지 아니하며, 기여금징수의무자는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보수가 지급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휴직기간 동안의 해당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기여금(이하 “소급기여금”이라 한다)을 따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휴직기간 중이라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매월 낼 수 있다.

39)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5조(보수 미지급 휴직자 등의 기여금 납부) ① 군인이 휴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기여금을 내지 않으며, 기여금징수의무자는 보수 미지급 사유가 소멸되어 보수가 지급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기여금을 소급하여 따로 징수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보수 미지급 기간 중이라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매월 낼 수 있다.

100분의 50'을 부담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음.

- (ii) 개정안이 사업장가입자 본인의 자부담분(100%)을 폐지하고, 국가와 사용자가 각각 반액씩 부담하게 하려는 것인 경우: 국가가 '연금보험료의 100분의 50'을 부담하도록 규정하면서,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사용자가 연금보험료의 납부 의무를 지도록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 「국민연금법」 제91조제1항⁴⁰⁾을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육아휴직 기간의 연금보험료 전액(사용자 부담금 제외)을 국가가 부담하게 하려는 개정안에 대하여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연평균 약 2,911억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하였음.

< 개정안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 추계 결과 >

(단위: 억원)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계	연평균
출산크레딧	2,216	2,522	2,867	3,257	3,696	14,557	2,91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40) 「국민연금법」 제91조(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① 납부 의무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중인 경우

라. 관계 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신중검토

-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통해 사업장가입자의 실질 가입 기간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기존 출산 지원제도인 출산크레딧과의 정합성, 지역가입자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기획재정부) 신중검토

- 육아휴직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연금보험료 지원은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사각지대를 축소하려는 재정지원의 정책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10